

“ 입국규제를 풀어 준다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”

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특례를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
특히 아래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입국규제 해제 대상으로, 법무부는 동포 규제 해제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국규제를 즉시 해제하고 있습니다.

- ① 신원불일치 사유로 입국규제된 만 65세 이상 동포
- ② 신원불일치 사유로 입국규제된 동포로서 위명여권으로 입국한 후 7년 이상 경과한 사람
- ③ 위 ①,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원불일치 사유로 입국 규제되고 3년이 경과한 동포

따라서 입국규제를 해제해 주겠다며 큰 돈을 요구하거나 각종 인맥 등을 내세우며 수수료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는 일부 여행사나 브로커 등에게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-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-

건설업 분야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제한 시행 안내

법무부는 최근 외국인의 불법취업으로 인해 건설업 등 단순·일용근로 분야의 국민일자리 잠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「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」상의 ‘유학생 시간제 취업 관련규정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.

【 유학생 시간제취업 규정 개정 내용 】

- 제한업종
 - (현행) 제조업
 - (개정) 제조업('17.4.부) 및 건설업(' 18.11.부)
-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
 - (현행) 1차 적발시 통고처분 후 1년간 시간제 취업 제한, 2차 적발시 강제퇴거
 - (개정) 현행규정 + 단서 추가 (단,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, 입국규제는 유예)
- ※ 학업지속 의사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후 재입국 허용
- ※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
- 시행일 : 2018.11. 1.부
 - 계도기간 2018. 10 1 ~ 10.31(1개월간)

2018. 10. 1.

법무부장관